

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

주주님의 건승과 닥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9조에 의거 제1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19년 03월 27일(수) 오전 10시

2. 장 소 :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로 99 (신평동), ㈜동성코퍼레이션 B1 연수실

3. 회의목적사항

1) 보고사항

가. 감사보고

나. 영업보고

다.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

2) 의결사항

제 1호 의안 : 제11기 (2018.1.1~2018.12.31)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
(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) 승인의 건
※ 이익배당 예정 내용 (1주당 배당금) : 보통주 200원

제 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제 3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 (사내이사 1명, 사외이사 2명)

제 3-1호 의안 : 사내이사 선임의 건 (백진우)

제 3-2호 의안 : 사외이사 선임의 건 (정철길)

제 3-3호 의안 : 사외이사 선임의 건 (김홍남)

제 4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(50억)

제 5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(2억)
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및 지점, 한국예탁결제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5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1) 직접 행사 : 신분증

2) 대리 행사 : 위임장 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, 대리인의 신분증)

주식회사 동성코퍼레이션

대표이사 박 총 열

□ 별 첨 : 신구조문 대비표 (정관 일부 변경의 건)

| 변경 전 | 변경 후 | 비 고 |
|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제9조(주권의 종류)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, 오주권, 일십주권, 오십주권, 일백주권, 오백주권, 일천주권,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.</p> | <p>제9조(<u>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</u>) <u>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</u></p> | <p>전자등록 의무화</p> |
| <p>제11조(명의개서대리인)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, 주권의 발행, 신고의 접수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</p> | <p>제11조(명의개서대리인)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<u>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</u>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</p> | <p>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동내용</p> |
| <p>제12조(주주 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)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,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.</p> | <p>제12조 <삭 제></p> | <p>전자등록으로 신고의무 소멸</p> |
| <p><신 설></p> | <p>제15조의2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</p> | <p>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 전자등록 의무화</p> |
| <p>제16조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 제11조,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</p> | <p>제16조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</p> | |
| <p>제43조(외부감사인의 선임)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</p> | <p>제43조(외부감사인의 선임) 회사는 주식회사 <u>등의</u>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</p> | <p>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</p> |

| | | |
|--|--|--|
| <p>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선임 후 최초 소 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한다.</p> | <p>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<u>그 사실 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 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</u></p> | |
| <p>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의 개정안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</p> | <p>부칙 제1조(시행일) <u>이 정관의 개정안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</u> <u>다만, 제9조, 제11조, 제12조, 제15조의2 및 제16조 개정내용은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시행되 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 | |